

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0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0. 2.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2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0. 20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최다원)

가. 개정이유

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(2023년 9월)된 이후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, 고성군 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를 넘어 활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「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「고성군 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(안 제명)
- 2)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위법 반영 조문 정비(안 제1조~제3조)
- 3) 위원회 신설(안 제4조~제11조)
- 4) 일부 미비점 보완(안 제12조~제14조, 제16조)
- 5) 세계유산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 신설(안 제15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반영[복지지원과-34496(2025. 9. 9.)호]

개정안	수정안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당초 개정조항 - 제11조(전문위원)제3항 ⇒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수정 - 제11조(전문위원)제3항 ⇒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 위원장의 추천 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 반영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389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0.~2025. 9. 9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라는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정 체계 중점 조례에서 세계유산을 향유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

○ 고성군 세계유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, 실무 지원 근거 마련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에 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인정되며, 각 조문이 관련 법령과 적합성 및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